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2019. 7.



문화재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3
2. 감사대상기관	3
3. 감사중점	3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3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공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1.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미흡 (기관주의)	5
2.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미흡 등 (기관주의)	8
3. 재현품 등록·관리 미흡 및 제기류 보관환경 개선 필요 (기관주의·통보) ..	10
4. 수목대장 관리 및 수목증감 보고 미흡 (기관주의·통보)	12
5. 청원경찰 복무규정 마련 필요 (개선)	14

<공능유적본부>

1. 종묘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개선)	15
---	----

<수리기술포>

1. 담장 보수공사 설계 시 공사비 산출에 관한 사항 (개선)	17
--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모시는 사당인 종묘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이전 자체종합감사는 2016. 4. 25.부터 4. 29.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유물과 재현품 및 수목 관리 실태, 자체규정 마련 및 운용 현황, 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9.4.22.부터 4.26.까지 5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4.26. 종묘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을 청취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미흡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내 용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이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제출받아야 하고, 사용료 면제 시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2011.4.1.)되었다.

서울 사직단(사적 제121호)과 사직단 정문(보물 제177호)은 당초 종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관리단체가 문화재청으로 변경(2011.11.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변경 고시」) 되어 고도보존팀에서 관리하다가, 다시 종묘관리소(이하 '관리소')가 위임(2013.1.1.)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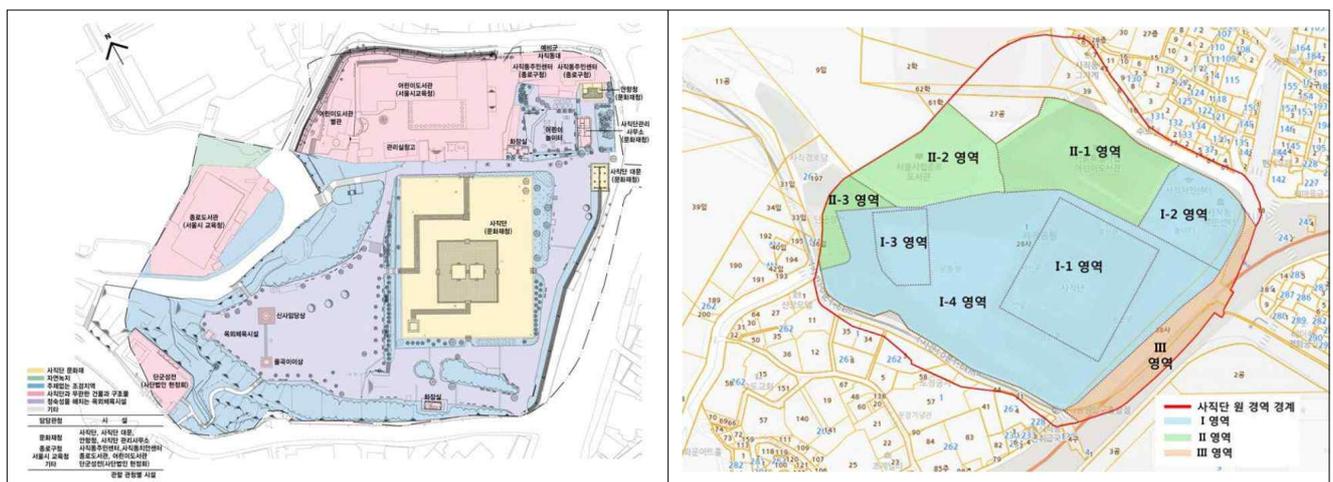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제출받아 사용료를 면제하되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관리소는 사직단을 관리하면서 사직단(○○구 ◇◇동 ◆◆번지) 내 6건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 계획을 제출받지 않고 ◆◆시청, ○○구청, ◆◆시 교육청 등에 아래 [표]와 같이 1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 하였다.

[표] 종묘관리소의 사직단 주변 국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구분	사용자	소재지	면적(m ²)	사용기간	사용료
토지	○○구청 (단군성전)	○○구 ◇◇동 ◆◆-◆◆	800.70	2014.12.28~2019.12.27 (허가기간 1년, 매년 재허가)	무상
	○○구청 (◇◇동주민센터)		674.40	2014.02.01~2019.12.31 (허가기간 1년, 매년 재허가)	무상
	○○구청 (주차장)		193.50	2015.01.01~2019.12.31 (허가기간 1년, 매년 재허가)	무상
	◆◆시교육청 (○○도서관)		2,914.50	2014.01.01~2019.12.31 (허가기간 1년, 매년 재허가)	무상
	◆◆시청 (어린이도서관)		6,611.50	2014.01.01~2019.12.31 (허가기간 1년, 매년 재허가)	무상
5건			11,194.60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2015.1.19.)를 거쳐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아래 [그림]에서 ◇◇동주민센터, ◇◇파출소 등이 포함된 I 영역은 2027년까지 복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단군성전 등이 포함된 II·III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원계획을 수립·확정하지 않아,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 허가해야 할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필요가 있다.

[그림] 사직단 주변 시설물 현황도 및 사직단 복원정비계획 영역 구분도



<사직단 주변 시설물 현황도>

<사직단 복원정비계획 영역 구분도>

조치할 사항

공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국유 재산의 사용 허가 시, 그 재산의 취득계획이 없고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미흡 등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내 용

종묘관리소(이하 '관리소')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종묘 공신당 및 칠사당 지의 교체' 등 6개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였다.

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미흡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와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따라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나,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소는 2016년 '종묘 식생 분석 및 전통조경 관리방안 연구'의 경우 입찰참가업체인 (사)○○○○○○○○의 임원 2명(고문 1명, 이사 1명)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포함하였고, '종묘 정전 제상 보수'의 경우에는 소속직원인 종묘관리소장을 평가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2018년 '종묘 공신당 및 칠사당 지의 교체'에서는 외부 평가위원과 내부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였다.

나.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실명 기재

위 규정 제7조(평가 실시)에는 평가위원에게 배부되는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소는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추진한 용역 6건 모두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업체의 실명이 기재된 제안서를 배부하였고, 평가 또한 실명으로 실시하였다.

다. 제안서 평가 시 배점한도 설정 부적정

한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소는 2017년 '종묘 제상 및 준상 보수'와 '2018년 종묘 공신당 및 칠사당 지의 교체'의 제안서 평가 시 '기술·지식 능력' 항목에 배점한도를 초과한 35점으로 설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시 이해당사자가 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위원에게 배부되는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설정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묘관리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미흡 사항

연도	계 약 명	계약별 평가 미흡 사항					비고
		평가위원 선정 미흡			평가자료 실명 표기	30점 초과 배점	
		소속 직원 참여	내부 위원 과반	기피 대상 참여			
2016	종묘 식생 분석 및 전통 조경 관리방안 연구			○	○		입찰참여 법인 임원 2명 참여
2016	종묘 정전 제상 보수	○			○		종묘관리소장 참여
2017	종묘 제상 및 준상 보수				○	○	기술지식능력 35점 부여
2017	201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		
2018	2018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		
2018	종묘 공신당 및 칠사당 지의 교체		○		○	○	기술지식능력 35점 부여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 통 보

제 목 재현품 등 등록·관리 미흡 및 제기류 보관환경 개선 필요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내 용

가. 재현품 등 기록·관리 미흡

종묘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종묘제례에 사용되는 제기류를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종묘 제기 25개 품목 769개를 국립고궁박물관에 이관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는 재현 제작된 제기 36개 품목 1,820개를 이관받아 보관하며 종묘제례 등에 사용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관받은 재현품도 하나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대장이나 문화재전자행정¹⁾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관받은 재현용품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나. 제기류 보관환경 개선 필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발간한 『유물 취급 매뉴얼(2017)』에는 구리합금이나 청동 유물은 부식을 막기 위해 낮은 상대습도(45% 이하)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소는 종묘제례에 사용되는 청동합금 제기류(유기)를 정전 제기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여름철의 경우 상대습도를 낮게 유지하기가 어려워 부식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관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재전자행정-궁능유적-수기대장관리-재현용품 관리

조치할 사항

공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은

1. 종묘제례에 사용되는 재현 제기류 등도 별도 대장이나 문화재전자행정예 등록·관리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2. 종묘 정전에 보관되어 있는 제기류가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 통 보

제 목 수목대장 관리 및 수목증감 보고 미흡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내 용

궁능유적본부 훈령 「궁·능 조경관리 규정」¹⁾(2019.2.19. 제정) 제7조(수목대장 및 도면) 및 제8조(수목증감 보고)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수목 관련 대장 및 도면을 작성·비치하고,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전년도 수목의 본수와 재적, 증가사유별 및 감소사유별 세부내역, 경관수목의 수종별 명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묘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종묘 경내 식생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체계적인 전통조경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식생 변천과정 등 도출된 조사분석 결과를 통하여 향후 전통조경 회복의 진정성을 확보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종묘 식생 분석 및 전통조경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2016.5.18.~2016.10.14./40,909천원/(사)○○○○○○○○)하였다.

위 용역 보고서에는 종묘 전체 수종별 식생 분포 현황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관리소는 용역 결과를 기존 수목대장에 반영하고 정기 증감 보고에 활용하는 등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2016년 국유재산 수목 증감 현황 보고 시(2017년 1월) 위 용역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수목증감 보고 자료에 매년 발생하는 수목 증감분만 적용하여 보고함으로써, 아래 [표 1]과 같이 교목류는 1,986주 많게, 관목류는 6,324주 적게 보고하였다.

[표 1] 2016년 용역결과 및 2016년 수목증감 보고 자료 비교

구 분	2016년 용역결과①	2016년 수목증감 보고②	오차(①-②)
교목류	3,021주	5,007주	△1,986주
관목류	10,328주	4,004주	6,324주
계	13,349주	9,011주	4,338주

1) 궁능유적본부 신설(2009.1.1.)에 따라 기존 「조경관리규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되었음

또한, 관리소는 2017년 국유재산 수목 증감 현황 보고 시(2018년 1월) 2016년 보고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엑셀 수식 입력 오류로 인해 아래 [표 2]와 같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목 현황을 보고하게 되었고, 이후 2018년 보고 시(2019년 1월)에도 수식 오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수목 현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수목증감 현황 보고서 보고 자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오차)
			보고(오기)	오기정정시	보고(오기)	오기정정시	
교목류	4,985주	5,007주	2,084주	5,042주	2,567주	5,525주	△2,958주
관목류	3,954주	4,004주	152주	4,033주	244주	4,125주	△3881주
계	8,939주	9,011주	2,236주	9,075주	2,811주	9,650주	△6,839주

※ 2017년, 2018년 자료는 엑셀 수식 적용 오류에 인한 오기로 잘못 보고됨

조치할 사항

공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은

1.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본부장에게 정확히 보고하기 바라며, (기관주의)
2. 수목대장 및 도면을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청원경찰 복무규정 마련 필요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내 용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복무)와 제17조(감독)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하며, 이 사항 외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고,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 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등을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와 시행령 제8조(징계)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 경찰 배치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종묘관리소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받아 경내 경비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종묘 관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제정(2014.7.16.)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여기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아직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어, 청원경찰의 복무 관리를 위해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이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은 청원경찰의 복무 관리를 위해 내부 규정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개 선

제 목 종묘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관계기관 궁능유적본부

내 용

종묘는 제례건축물로서의 가치와 종묘제례와 의식이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1995년 12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종묘의 관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최근에 추진한 관련 연구용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재청에서 종묘 정비 등을 위하여 추진한 연구용역 현황

연도	연구용역명	주요과업	과업 수행자
2002	창덕궁·종묘 원유	○실증적 자료 제시 ○복원 및 정비방안 마련 ○세계유산 정기보고서 기초 자료 활용	●●●●●●●●●●
2006	종묘 조경 정비 기본계획	○조경 복원·정비 방안 제시	●●●●●●●●
2016	종묘 식생 분석 및 전통 조경 관리방안 연구	○식생조사, 식생경관 분석 ○식생 개선방안 도출 ○수목관리 전산화 및 활용 방안 제시	○●○●○●○●○●○

위 연구용역 보고서 내에 제시된 정비방안 중 감사기간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주요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종묘 정비 관련 연구용역 시 제시된 정비방안 중 미추진 사항

연도	연구용역명	정비방안
2002	창덕궁·종묘 원유	○영녕전 소악공청 인근 제정(祭井)의 복원 ○조성연대가 불명확한 정문 측면 연지(1985년으로 추정)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 검토 ○음수전 철거
2006	종묘 조경 정비 기본계획	○영녕전 제정(祭井) 복원 ○북신문(北神門) 복원 ○화장실 위치조정 및 리노베이션 ○음수전 철거 ○창업문 서측 가산(假山) 발굴조사를 통한 원위치 확인
2016	종묘 식생 분석 및 전통 조경 관리방안 연구	○수목 벌채 및 식재(장기 추진 필요) ¹⁾

1) 전체 사업 예산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나 연도별 추진계획은 미수립

위 [표 2] 이외에도 종묘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성을 당시 소관 부서였던 궁능문화재과에 보고(2010.3.29.)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 신로(神路) 또는 어로(御路)의 갯돌이 풍화가 심하여 신성함을 저하
- 재궁 인근 어로 박석 형태가 다른 곳과 다름
- 영녕전 앞 신로 또는 어로의 높이가 낮아지고 박석 형태가 변형되어 있음
- 정전 및 영녕전 신실 앞 바닥이 시멘트 몰탈로 설치되어 있음
- 재궁 어재실 한쪽 퇴칸이 방으로 추정되나 마루로 변형되어 있음

또한, 감사기간 동안 경내를 살펴본 결과, 위 보고서의 정비 대상 이외에 정전의 판위와 어로 부분이 주변 박석의 높이와 같고, 재궁 주변 일부구간은 어로 부분 이외에 별도 통행로 없이 어로 부분과 잔디 경계 로프가 연결해 있어, 이 또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재청 예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2009.9.24. 제정)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에 관리단체는 사적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정기 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 관리국은 관련 협약¹⁾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현황을 6년마다 유네스코에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3차 정기 보고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있을 예정이다.²⁾

그러나, 종묘 정비사업은 주로 고건물 및 담장 보수, 관리시설 보수, 수목 관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 등을 위해서는 위 [표 2]의 정비방안과 관리소 보고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경내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변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궁능유적본부장은 체계적인 정비 및 유네스코 정기 보고 등을 위하여 종묘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 세계유산협약 및 협약이행지침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3차 정기보고 관련 안내(세계유산팀-486(2019.2.27.)호)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담장 보수공사 설계 시 공사비 산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내 용

종묘관리소는 외곽 담장 보수를 위한 설계를 아래 [표]와 같이 시행하여 산출된 공사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담장 보수공사를 발주하였다.

[표] 종묘 외곽 담장 보수공사 설계 현황

연도	건명	계약자	계약금액	산출 공사비
2015	2015 종묘 동측 외곽 담장 보수공사 설계	■■■■■■■■■■	14,059,780원	219,750,000원
2017	2017년 종묘 동측 외곽 담장 보수공사 설계	▣▣▣▣▣▣▣▣	21,793,400원	200,000,000원
2018	2018년 종묘 동측 외곽 담장 보수공사 설계	◆◆◆◆◆◆◆◆	46,828,000원	475,000,000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15장 기타공사 15-0 적용기준에는 담장높이(담장기와높이 제외)가 지면에서 1.5m 초과 시 인력품을 30%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건 중 2017년 2018년의 경우, 설계자는 보수 대상 담장의 높이가 모두 1.5m를 초과하므로 사피석 담쌓기 한 면 1㎡당 인력품을 30% 가산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하고, 담장 전체면적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 담장 중 1.5m까지 높이까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인력품 가산 없이 산출하고, 1.5m 초과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만 30%를 가산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위 설계자와 같이 ▲ 담장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인력품을 30% 가산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담당하고 있는 수리기술과에서는 ‘1.5m를 초과하는 면적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2017년과 2018년 담장보수 공사의 공사비(계약금액 기준)를 다시 산출하면 각각 199,467,025원, 470,474,123원으로, 예정가격을 각각 532,975원과 4,525,877원 과다 산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담장공사 인력품 가산규정은 해석을 달리 함으로써 예정가격을 서로 다르게 산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리기술과는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해당 규정 적용기준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수리기술과장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담장공사 인력품 가산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